2026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정오사항_5 (초판기준)

페이지	30p
수정 전	(5) 도시형 생활주택 ① **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.** ㉠ 아파트형 주택 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ⓑ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㉡ 단지형 연립주택 : 연립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**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** ㉢ 단지형 다세대주택 : 다세대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**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**
수정 후 **[법령 개정 및 신설]**	(5) 도시형 생활주택 **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** **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500세대. 다만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중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세대수** **㉡ 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300세대** **② ①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** ㉠ 아파트형 주택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ⓑ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㉡ 단지형 연립주택: 연립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**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.** **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5개층까지** **ⓑ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6개층까지** ㉢ 단지형 다세대주택: 다세대주택. 다만,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**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.** **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5개층까지** **ⓑ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: 6개층까지**